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38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위성곤 · 박희승 · 김기표
이건태 · 이학영 · 박지혜
이소영 · 박정현 · 서영교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지 못하고, 환경부 또한 산업과 에너지 중심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던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에너지, 지하자원, 기후산업 정책을 일원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원회

제12조제2항 중 “부총리 및”을 “부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명을”을 “3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과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 중 “부총리의”를 “부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후환경에너지부에는”으로 한다.

14. 기후환경에너지부

제38조제1항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를 “산업기술 연구개발에”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은”으로, “개발 및 하천에”를 “개발, 하천, 기후위기 대응,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지하자원, 기후산업과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40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소속 공무원 중 제40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하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하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 략)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원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무회의) ① (생 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	② ----- ----- ----- ----- ----- ----- -----

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④ (생략)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② (생략)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⑤ (생략)

<신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부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

-----3명을-----.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과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부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 13. (생략)

14. 환경부

15. ~ 19. (생략)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생략)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6조(행정각부)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기후환경에너지부

15. ~ 19. (현행과 같음)

② -----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후환경에너지부에는-----.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

-----산업기술연구개발에-----
-----.

② ~ ⑤ (생 략) 제40조(환경부) ① <u>환경부장관은</u>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 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 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기 위하여 <u>환경부장관</u> 소속으 로 기상청을 둔다. ③ (생 략) <u><신 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기후환경에너지부) ① <u>기 후환경에너지부장관은</u>----- ----- --개발, 하천, 기후위기 대응, <u>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지하자 원, 기후산업과 이에 대한 연구 개발에</u>-----. ② ----- -----<u>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u>-----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후환경에너지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u>
---	--